

##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김 두 년\*  
Kim, Doo-nyeon

#### 목 차

- I. 서론
- II. 국내 인권법의 연구동향
- III. 국제인권법의 규범체계
- IV. 인권사회학의 대두
- V. 결론

#### 국문초록

인권연구는 참된 의미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다.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 따라서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들 상호간의 학문교류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를 비교 연구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학문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법의 연구에서는 인권법의 종합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등의 인권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사회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들 학문적인 교류도 필수적이다.

---

논문접수일 : 2013.09.22

심사완료일 : 2013.10.28

게재확정일 : 2013.10.30

\* 법학박사 · 중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dnkim@jwu.ac.kr.

둘째, 국제인권법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반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셋째, 인권사회학에서는 인권법의 실정법적인 성격을 존중하여 인권규범들이 현실적인 인권신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권, 인권법,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 1. 서론

계몽주의시대에 싹트기 시작한 자연권사상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을 거쳐 구체화되고, 또 다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반성으로 유엔헌장과 유엔의 조약에 기초한 인권기구와 인권의 국제기준이 만들어지고 유엔의 인권감시기구를 통한 가입국들의 이행을 공동으로 담보하게 되면서 국제인권법이 중요한 인권법의 법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면서 인권법에 관한 연구는 국제인권법이 주도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학분야에서도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사회학회에 글로벌리제이션과 인권섹션이 만들어 지면서 인권사회학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인권사회학은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인권개념을 규범적으로 접근하거나 질적, 계량적으로 다른 사회적 조건들과 연관하여 분석하거나 사회적인 구성과 해체과정의 연구를 통해 인권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로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연구방법으로 인권에 접근하고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인권사회학의 관심은 인권법학에서처럼 국내의 실정법학적 규범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사회과학적, 역사적인 연구방법론을 구사하여 인권의 신장과 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법의 연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세의 자연권 사상에서 출발한 인권의 개념은 시대적, 역사적 변천을 겪으면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하나씩 실정권으로서 법학에 수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인권을 감시하면서 새로운 국제인권규범체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들은 인권의 보편주의적 성격에 따라서 국내의 인권법에 수용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동성혼인문제나 이민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역사학이나 사회학적인 연구결과들은 인권법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에 관한 연구는 각 학문분야가 서로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는 종합학문의 구조이기 때문에 인권법과 인권사회학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 종교학, 철학, 역사학, 법학, 사회학적인 연구의 종합적 산물이다. 이하에서는 인권의 종합 학문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권법학과 인권사회학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각 분야의 인권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상호간의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내 인권법의 연구동향

### 1. 인권법학의 개념과 특징

#### 가. 인권법학의 개념

그동안 인권분야의 연구는 대체로 인권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인권개념 자체가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법,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인권법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간단히 '인권'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법제도와 법 현실을 분석·비판하고 인권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학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sup>1)</sup>

## 나. 인권법학의 종합 학문성

인권법은 종합법학으로서 어떤 특정분야의 법규범이 아닌 모든 법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법은 어떤 특정영역의 규범체계를 연구하는 분야별 법학(헌법, 민법, 형법 등)과는 달리 국내법과 국제법 나아가서 자연법에 이르기까지 법 영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종합법학이다. 인권법은 인권의 보편적 성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국제인권법에 대해서는 국제조약의 가입과 비준에 관계없이 국내법의 인권원칙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법의 체계는 국제인권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 다. 인권법학의 독자성

인권법은 헌법의 인권관련 규정이나, 형법의 인권관련 규정과 같이 개별적인 실정법의 태두리 내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의 보편적인 잣대를 사용하여 각 영역의 실정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런 이유로 인권법은 종합법학의 지위에서 각 개별법학의 영역과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법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독자적인 법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2)</sup>

## 2. 인권법학의 연구동향

### 가. 인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인권법의 기초분야는 인권의 본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인권사회학,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기구론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분야는 원래 법학의 분야가 아니라 역

---

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도서출판 한울, 2012.1, 20면.

2)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08.06, 20면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20-21면.

사학이나 철학, 사회학의 분야이지만 인권법과 불가분의 기초분야로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만, 인권법에서 이 분야를 연구할 때에는 인권법의 시각에서 취지에 맞는 대상과 연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큰 흐름으로 다가온 사회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인권사회학적인 연구도 인권법의 기초적 인식에서 중요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기본권으로 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기본권의 효력에 따라서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현실적인 기본권과 국가에게 기본권의 보장을 위임한 프로그램적 기본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리로서는 평화적 생존권이든가, 건강권, 주택권, 사회적 환경권, 휴식권, 일조권, 알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 연대권,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은 것은 새로운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권적인 인권규범이나 국제인권규범과 같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인권의 주제별 연구

앞에서 연구한 것이 인권법의 총론적인 연구라면, 영역별 인권법제 연구는 각론적인 연구 분야에 속한다. 인권에 관한 주제별 연구로서 먼저 '사법(司法)과 인권' 분야를 들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법과 인권분야의 이슈를 보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선고여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친고죄 폐지 등 엄벌주의와, 막말 판사 등 재판운영의 문제, 형사사건 무죄율의 증가, 검찰비리사건과 검찰개혁 논

의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사법제도와 인권에 대한 연구로는 검찰과 인권, 경찰과 인권, 형사피의자와 인권, 재소자와 인권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다음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에 관한 주제별 연구를 들 수 있다.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근로와 인권, 환경과 인권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연구로서 여성과 인권, 아동과 인권, 청소년의 인권, 노인과 인권, 장애와 인권, 외국인과 인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결혼이민자의 인권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인권에 관한 연구로서 북한의 인권, 아프리카의 인권, 동아시아의 인권 등을 들 수 있다.

#### 라. 인권 제한의 원리에 관한 연구

법률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가 있는데 ‘법률에 의한 인권의 제한’과, ‘비례의 원칙’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러한 경우를 법률에 의한 인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그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sup>4)</sup> 이러한 법원칙에 의한 제한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이라고 한다.

#### 마.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연구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편적 인권에 대하여도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권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헌법 제37

3) 대한변호사협회, 「2012 인권보고서」, 49-73면.

4) 헌재 1990.9.3. 89헌가95.

조제1항 및 제10조 후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인권침해와 평등권 차별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시정하는지가 인권법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그 밖에도 각종 법률에서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1.12.31.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0.1.12. 전면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7.4.10.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밖에 성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여성발전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 바. 인권의 구제에 관한 연구

인권법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법이다.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방법은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의한 침해구제, 사법절차에 의한 침해구제, 대사인적인 침해 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한 침해구제란 공권력<sup>5)</sup>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5)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sup>6)</sup>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sup>7)</sup> 다만,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국가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행정절차에 의한 침해구제방법은 처분청이나 감독청에 의한 취소, 청원, 민원처리제도, 행정심판제도, 국가배상제도 등이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중앙기관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sup>8)</sup>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써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절차를 인권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은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이다. 범죄행위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고발 등으로 형사절차를 통하여 인권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절차(司法節次)에 의한 침해구제는 민·형사 소송절차를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이해하여야 하고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6)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인권침해, 검색일자 : 2013.5.15.

7) 현재 1997. 12. 24. 96헌마172.

8) 2008년 2월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인(私人)간의 민사법적(民私法的)적인 침해구제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권단체를 통한 침해구제를 들 수 있다. 대 사인적인 침해구제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화해, 제3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인권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례와 같이 국제간의 금전적인 구제절차에서는 민간기구를 통한 당사자 간의 해결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인간의 민사법적인 구제방안도 인권법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3. 인권법의 법원성

헌법은 인권에 관한 국내법적 최고의 법원이다.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선언적 의미를 가지거나 프로그램적 기본권 규정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조치 등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인 인권침해사태에 대하여 헌법이 직접적인 법원이 되기보다는 개별법의 법원성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을 받은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법원성을 가진다.

불문법 중에서는 국내 관습법과, 국제관습법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법원성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 중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규범의 법원성이 문제가 된다.

### 4. 인권법학의 과제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유엔의 인권규범체계가 국내인권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권법 교과서가 국제인권규범을 인권법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인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권법학의 종합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법, 민사법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의 연구가 법학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자연권에서 출발한 인권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정법적인 권리로 규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권규범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 정치적인 연구, 사회학적인 연구방법론을 동원해야 하고 이들 학문의 연구성과를 인권법학에 도입하여야 한다.

### Ⅲ. 국제인권법의 규범체계

#### 1. 국제사회와 인권

인권에 대한 이해과 관념은 특정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인권의 역사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인권보장을 이행할 필요성에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현존하는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관습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권, 인권보호에 대한 원칙과 제도, 인권정책의 형성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체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우리나라의 인권법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권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인권법의 발전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바작(Karel Vasak)<sup>9)</sup>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을

---

9) 카렐바작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International

회고하면서 세대개념을 이용하여 '3단계 인권론'을 주장하였다.<sup>10)</sup>

#### 가. 제1세대 인권(정치적·시민적 권리)

제1세대 인권이라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창은 시민계급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권리개념은 1789년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유럽 인권 규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속성은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국가에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권리(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sup>11)</sup> 인권의 내용을 보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 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자유와 권리들이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흔히 제1세대 인권이라 부른다.

#### 나. 제2세대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세대인권은 20세기에 들어서 현대 시민헌법상의 실질적 평등을 기초로 하는 사회권 중심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개념은 1918년의 「노동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 1919년 바이마르(Weimar)헌법 제151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22조에서 27조에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평등에 그 기초를 두고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개념은 현대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사회권(Sozial rechtsgrund)체계가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제2세대 인권이라고 부른다.

*Dimensions of Human Rights, 1982'*가 있다.

10) 박찬운, 인권법, 37면.

11) 토머스페인·박홍규(역), 「상식」, 필맥, 2004, 138-139면.

### 다. 제3세대 인권(연대와 단결의 권리)

제3세대 인권은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권의 국제화에 따라서 발전된 개념이다. 이 권리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제적 연대성을 기초로 자결권, 인종차별금지, 발전권과 같은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강조한다. 제3세대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권리로서는 환경권, 발전권, 평화권, 인류공동유산의 혜택을 받을 권리,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원조를 받을 권리와 같은 것이다. 어린이·여성·전쟁포로·난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협약들이 제정되었으며, 인종차별 금지, 사형제도의 폐지, 학살과 고문 같은 반인륜적 범죄, 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들이 제정됨으로써 인권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제3세대 인권은 특정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적 사회적 연대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3세대 인권은 아직 인권으로서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인권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인권을 세대별로 구분해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후세대의 인권이 앞 세대의 인권을 대체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sup>12)</sup>

## 3. 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국제인권규범이란 현존하는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관습법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권, 인권보호에 관한 원칙과 제도, 인권정책 형성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sup>13)</sup>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은 형성과정과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국제인권규범은 시민과 국제조직의 노력이 낳은 산물이다. 국가보다는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운동에 종사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입안하고 초국가적 캠페인을 주도하며 각국의 국가정책으로 인권보호를 채택하도록 설득하여 왔다.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56-57면.

13) 국가인권위원회, 상세서, 158면.

현대 인권규범의 발전 및 정착과정을 보면,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엔의 성립과 인권규범의 실정법화 한 인권의 근대화 과정, 둘째, 인권협약들의 정착과 인권체제가 등장한 인권의 국제화 과정, 셋째, 인권규범들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수용된 인권의 보편화 과정, 넷째, 인권규범이 사회구성원의 규범의식 속에 확립된 인권의 내재화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다.<sup>14)</sup>

#### 4.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발전

유엔에 의한 국제인권 보장시스템은 크게 나누어서 유엔헌장에 기초한 인권보장 시스템과,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시스템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엔헌장에 기초한 인권보장시스템은 개별조약의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유엔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유엔인권규약과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시스템은 개별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에게 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인권조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각 체약국의 이행보고서에 따라서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 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 인권규약에는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있다. 1945년의 유엔헌장은 인권보호에 관한 제55조와 제56조가 헌장에 포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 따라 1948년 최초로 채택된 보편적인 국제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문서로서 이미 그 대부분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을 형

14) 국가인권위원회, 상계서, 165-166면.

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선언은 최초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불가분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sup>15)</sup>

#### 나. 유엔기구에 의한 인권보호

유엔기구에 의한 인권보호체계를 보면, 유엔의 핵심조직인 총회(General Assembly)는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권보호 관련결의는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일하게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산하에 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두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제안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총회의 결의(48/141)에 의해 창설되어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직책이다. 유엔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유엔의 주요 인권시스템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sup>16)</sup>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46년에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 간 회의이지만 민간단체도 서면진술서 제출, 구두발언, 로비활동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sup>17)</sup> 2006년에 인권위원회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개편되면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에서 총회 산하의 기구로 격상되었다. 인권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정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국제문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기타 특정 임무들을 수행한다.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1946년 설립되었는데 그 기능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권고와 보고서를 만들고 양성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권리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경

15)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2013, 209면.

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185면.

17)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환경운동 연합 등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핸드북」, 2003, 87면).

제사회이사회에 권고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헌장과 조약을 해석하고 헌장이 창설한 기구들의 인권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 다. 국제인권조약과 인권보장<sup>18)</sup>

국제인권제도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인권조약에 기초한 제도이다.<sup>19)</sup>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제도는 상호 긴밀히 연관된 9개 핵심 조약이 그 토대를 이루는데 조약을 비준한 국가에게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가가 적어도 대부분의 조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인권조약에 기초한 제도 역시 모든 국가들과 연관되었다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인권조약 당사국은 조약 이행실적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조약 감시기구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20)</sup> 인권법의 근간이 되는 각 조약의 규정에 따라 9개 위원회가 각자 이행감시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각 체약국의 이행보고서를 심사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한 권고를 마련하고 있다.

### 5. 국제인권법의 효력

국제인권법의 효력은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 각국의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을 한 국가의 법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은 개별국가의 주권사항이며 국가마다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각국의 헌법 및 판례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그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전통적으

18) 원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12. 및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이슈별자료실 > 인권·사회 > 국제인권규범을 참조.

19) 조약제도 : [www2.ohchr.org/english/bodies/docs/OHCHR-FactSheet30.pdf](http://www2.ohchr.org/english/bodies/docs/OHCHR-FactSheet30.pdf). 참조

20) ICCPR (40조); ICESCR (16-17 조); ICERD (9조); CEDAW (18조); CAT (19조); CRC (44조); ICRMW(73조); CRPD (35-36조); CPED (29조) 참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관련, 아동의 무력분쟁 동원 금지를 위한 선택의정서 (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관련, 아동 매매, 성매매, 성포르노 금지를 위한 선택의정서 (12조).

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설명한다.<sup>21)</sup><sup>22)</sup>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별개의 법체계가 아닌 하나의 법률적인 체계로 인식한다. 이원론은 국가주권 우위에 기초하여 국내법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을 통하여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sup>23)</sup>

법체계상 국내법에서는 헌법을 능가하는 법체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인권법의 영역에서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헌법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의 잣대에서 비판될 수 있고, 인권은 인권법의 중요한 특질 중의 하나인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 상위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이 실정법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져야만 인권법의 실제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는 이원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권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원론적 법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 존중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을 직접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관습법 조약<sup>24)</sup>이 국내법상의 효력을 가지게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1)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개정판)」, 박영사, 2011, 77-79면.

22) 일원론을 통일설, 이원론을 대립설로도 설명한다(지영환·김민진,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47-248면).

23)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용과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2호(통권 제121호), 대한국제법학회, 2011.6. 126면.

24) 여기에서 조약이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로서 조약·협약·협정·규약 등 명칭을 불문한다(지영환·김민진, 전개논문, 249면).



다만, 여기에서 헌법 제6조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sup>25)</sup> '국제관습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26)</sup>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그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27)</sup>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대해서도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였다.<sup>28)</sup> 한편, 공공부분에서의 단결권 보호 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의 효력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sup>29)</sup> 국내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sup>30)</sup> 세계인권선

-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6) 우리나라에서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내법적인 법원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 27)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재 1991.7.22. 선고 89헌가 106).
- 28) 1960. 10.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실시를 제약하면서까지 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든가 교원단체를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직단체로서 구성하는 것을 제재하고 반드시 일반노동조합으로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전문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준종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29)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 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
- 30)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손종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언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의 특별입법이 없는 이상 권고적 효력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sup>31)</sup>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실무에서도 온전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학자들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인 주장과 원용이 필요하다.<sup>32)</sup> 또한 국제인권법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반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sup>33)</sup>

## IV. 인권사회학의 대두

### 1. 인권사회학의 개념

인권사회학은 인권과 사회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사회학은 인권을 사회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인권사회학은 인권의 사회적 기초, 사회적 운영과 사회적 결과에 이르기 까지 사회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인권사회학에서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의 변인(變因)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예를 들어 정치조건이 바뀌었거나 사회적 변혁이 있었을 때 그 사회의 인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

제2조 제3항은 이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만 개인이 이 규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9.3.26. 선고, 96다55877).

31)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특별입법이 없는 이상 이것 또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다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89구19296 판결).

32) 박형숙, "대한민국법은 세계법의 일부다." 『웹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4.11.

33) "국내 법률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면 이를 우리의 헌법이 천명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6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바로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다.(박형숙, 상계논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나가는 것이 인권사회학이다. 인권사회학은 사회학적 접근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을 권리의 작동과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위와 규범과 제도, 그리고 인권이 제기되고 옹호되는 맥락과 의미의 해석학적 연구, 권리와 권리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들을 연구한다. 원래 권리의 개념은 꼭 집어서 규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인권 연구는 권리가 구현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다. 법이 있어도 왜 그것이 일관성이 없이 적용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하기도 하고,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잠재적 침해집단을 연구하기도 하고,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거나 미래의 인권을 전망하는 연구를 하기도 한다.

## 2. 인권사회학의 특징

21세기는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권의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분석과 정책 그리고 실천이 힘을 가지고 중심된 위치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인권에 대해서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권사회학은 이미 결정된 기존의 가치체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고 인권을 사회적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인권에 관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며 서술적이다. 인권사회학의 목적은 실용이 아니라 순수한 인식이며 인권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인권의 사실이다. 인권법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권과 사회와의 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이다.

## 3. 인권사회학의 연구대상

인권사회학은 인권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사회내의 인권현상

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권의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인권사회학은 일반이론적인 연구방법과 경험적 개별적 조사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권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인권과 사회의 관계, 사회내의 인권현상,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인권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인권사회학적인 연구방법은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현상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동인(動因)에 의해 생겨났으며 이러한 인권현상들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험적 논리적으로 연구한다. 인권과 사회현상의 관계 속에서 인권의 변화의 맥락과 흐름을 연구하고 이러한 인권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내의 인권감수성에 관한연구와 인권지수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집단을 비교 연구한다.

## V. 결론

인류역사에서 나타난 일련의 인권발전은 온전히 법학의 영역이나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평등을 이룩했고, 중세의 자연권 사상은 군주주권에서 분리된 천부인권을 이끌어내었다. 18세기말 영국의 시민계층이 주도한 노예제 폐지운동은 영국의회가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하였고, 자본주의의 발달은 강제노동금지협약을 만들었다. 오늘날 인권 NGO 들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협정을 입안하고 감시하며, 대중교육과 캠페인활동, 정보와 전문지식의 제공, 피해자들의 구제, 정부나 의회의 로비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권 NGO들의 대부분은 1970년대 헬싱키협정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인권감시에 기여를 했다. 또한 인권 NGO들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북경 제4차 여성회의, 2001년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금지 등의 세계회의 성공에도 실천적인 기여를 했다.

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변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 법은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조등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학의 입장에서는 법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존재한다. 인권과 사회의 연계선상에서 철학적, 정치적, 문화적 변인들에 대한 사회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인권법학에 도입하여 인권법학에서 달성하지 못한 인권 개선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사회학의 연구결과들은 인권법에 수용하여 인권법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실정법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대의 인권연구는 특정학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권은 법학, 국제법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사회복지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인권연구는 참된 의미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권연구의 거대한 흐름에 여러 학문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법의 연구에서는 인권법의 종합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등의 인권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인권법학의 종합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법, 민사법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의 관계에서 또한 인권사회학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학문 간의 학문교류가 필수적이다.

둘째, 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인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의 보편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국내인권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서 국내인권법은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인권법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반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법과 인권사회학의 관계에서는 인권법의 준립의 기반이 되는 인권사회학으로부터 철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인권법학에서는 인권사회학의

연구결과들은 수용하여 인권법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실정법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사회학에서는 인권법의 실정법적인 성격을 존중하여 인권규범들이 현실적인 인권신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2013.0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자를 위한 인권 핸드북」, 200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길라잡이(경찰편)」, 공무원 인권교육교재 시리즈2, 2002.  
대한변호사협회, 「2012 인권보고서」, 2012.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01.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08.06.  
박형숙, “대한민국법은 세계법의 일부다.” 「웹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4.11.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국제법학논총」 제56권 제2호 (통권 제121호), 대한국제법학회, 201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인권조약집」, 도서출판 사람생각, 2000.12.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개정판)」, 박영사, 2011.  
지영환·김민진,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Abstract]

##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Kim, Doo-nyeon

*Law Professor at Jungwon University*

Research on human rights is a discipline which nee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Due to the natur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ha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m and mutual academic exchange is required.

This paper studie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studies comparing the were studied. In this paper, the academic challenges presented in each field are as follows:

First, in studying the human rights law, due to the comprehensive natur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basis of human rights such as the essence theory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thought, human rights movement history and so on. In addition, employing research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sociology is essential for academic exchange.

Second,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 legal efforts are needed to accommodate the various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which have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show an active position to adop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as norms in domestic courts.

Third, in respecting for the fact of the legal nature of sociology in human rights sociology, the effort to connect human rights norms between realistic

human rights is required.

**Key words** :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Sociology, Fundamental Rights